장기기증 · 이식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 이식]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는 방법, 뇌사자의 장기기증 방법,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방법,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장기이식 방법, 장기 외 기증 방법까지 장기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기증 · 이식 1
1. 장기 기증 · 이식 개요 4
1.1. 장기기증 · 이식 개요 4
1.1.1. 장기기증 · 이식 개요 4
1.1.2. 장기기증 · 이식 관련기관 6
1.1.3. 장기기증 · 이식 관련 법제 9
2. 장기기증 11
2.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11
2.1.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개요 11
2.1.2.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12
2.1.3.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17
2.2. 뇌사자의 장기기증 19
2.2.1. 뇌사자의 장기기증 개요 19
2.2.2. 뇌사판정절차 20
2.2.3.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22
2.2.4.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26
2.3.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28
2.3.1.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28
3. 장기 이식 34
3.1. 이식대상 장기 34
3.1.1. 이식 가능한 장기 34
3.2. 장기이식 대상자 등록 및 선정 34
3.2.1.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34
3.2.2. 이식대상자 선정 35
3.2.3. 장기이식 전 검사 및 비용부담 37
4. 장기 외 기증 40
4.1. 인체조직기증 · 이식 40
4.1.1. 인체조직기증 · 이식 개요 40
4.1.2. 인체조직기증 42
4.1.3. 인체조직이식 46

1. 장기 기증 · 이식 개요

1.1. 장기기증 · 이식 개요

1.1.1. 장기기증 · 이식 개요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

▪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골수·안구
-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기등”을 “장기”로 표기합니다.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자의 개념

▪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장기이식"이란?

장기이식 및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기증·이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과 간장·말초혈·골수·폐 및 췌장·췌도 및 소장의 일부(16세 미만인 사람은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해 기증할 수 있음)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살아있는 사람 간(間) 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 뇌사자는 본인이 뇌사하기 전에 또는 가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신장·간장·췌장·심장·폐·말초혈·골수·안구·손·팔·발·다리·췌도·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2조제3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 사망한 사람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 사망한 사람의 안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구기증 · 이식 흐름도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차이>

구 분	장 기	인 체 조 직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저장 및 보관	보관 및 저장 불가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이식요건	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

※ 장기 외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기기증·이식-장기 외 기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장기기증 · 이식 관련기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장기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장기의 적출·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장기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이식대상자의 선정
-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장기기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
-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통계의 관리 및 홍보
-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장기의 보존,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리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 장기의 적출·이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 적출된 장기의 보존·이송 지원 등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업무의 지원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 장기기증자·장기기증희망자·장기이식대기자의 접수와 등록,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접수·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

▪ 등록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장기이식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은 장기의 이식을 위해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거나 적출된 장기를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이식하는 의료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다음의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설치된 수술실
-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 영상의학검사시설
-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명(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가능)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가능)

뇌사판정의료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 "뇌사판정의료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 뇌사판정의료기관은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이 아닌 위원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 교원, 종교인 및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위촉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뇌사판정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뇌사판정의 신청이 된 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등록기관일 것
- 뇌사판정의료기관일 것
- 이식의료기관일 것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충족할 것

※ 지역별 장기기증·이식 관련 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장기기증 · 이식 관련 법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의 정의

▹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골수·안구

√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함)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등록기관은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 안구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및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와는 다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인체조직의 범위,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이란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심장판막·혈관·신경 및 심낭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조직의 이식 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장기·조직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제3항).

2. 장기기증

2.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2.1.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개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 장기기증·이식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腦死者)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뇌사자의 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 간장·골수·폐·췌장(膵臟)·췌도(膵島)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는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나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장기기증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16세 미만인 사람(다만, 말초혈과 골수는 16세 미만인 사람도 기증 가능함)
- 임신한 여성,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신질환자·지적(知的)장애인(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 장기기증이 제한되는 경우

▪ 살아있는 사람 중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말초혈과 골수는 제외)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등록 방법 및 동의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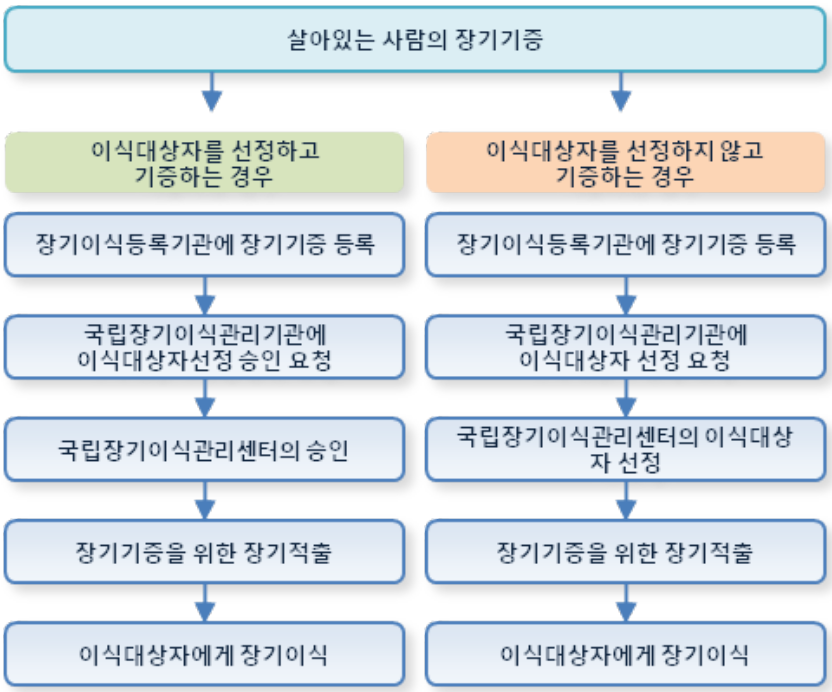
Q. 22세 남성 A는 말기 신부전증인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역병인 A는 수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 병역처분 변경, 병역면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증 등록방법

▪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가 없고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아래와 같은 가족의 동의 방법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 장기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제12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신청

▪ 장기기증 등록을 할 때에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호).

>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함)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의 장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동의의 철회

▪ 본인 또는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이식대상자 선정방법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선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안구의 경우

-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등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가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팔 또는 발·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함)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후단).

▪ 위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기 위해 장기(말초혈 또는 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
-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에 따라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장기 적출

장기적출

▪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부와 본인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장기기증자의 건강상태
- 장기의 적출수술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장기의 적출 후 치료계획
- 그 밖에 장기기증자가 장기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및 추징

▪ 매매행위 등의 금지 행위에 따른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 조혈모세포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증하나요?

·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고,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는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데 신장 등 장기와 달리 조혈모세포는 환자와의 유전자형 일치가 수백에서 수만 분의 일의 확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먼저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한 후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면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증희망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의 기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

-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입원·퇴원 확인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함)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2.2. 뇌사자의 장기기증

2.2.1. 뇌사자의 장기기증 개요

뇌사자

뇌사자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혈압·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 신장·간장·심장·폐·췌장·췌도·소장·안구·손·팔·발·다리 등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구 분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	자발적 호흡 불가능	자발적 호흡 가능
회복가능성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수개월~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장기기증 가능 여부	장기기증이 가능함	장기기증 불가능

2.2.2.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결정을 내립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뇌사판정 신청

뇌사판정의 신청

▪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뇌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뇌사추정자의 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후단).

신청절차

▪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뇌사판정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뇌사추정자에 대한 검사기록 사본
-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뇌사판정기관의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내 유관기관-장기-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벌칙

▪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 전문의사나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뇌사판정

뇌사판정

▪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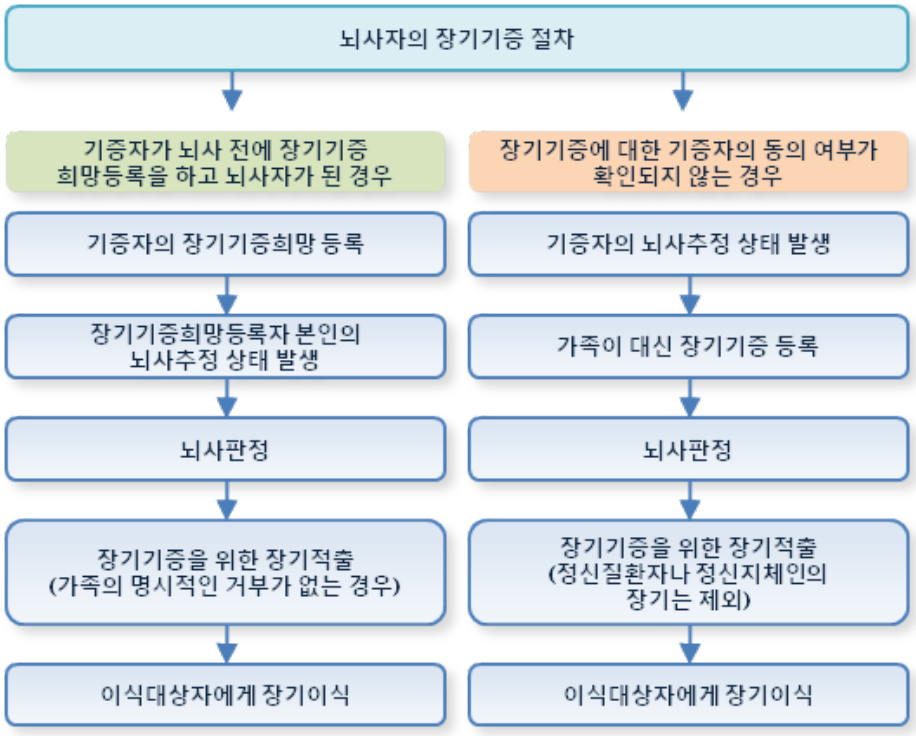
▸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이식 개요-장기기증·이식 개요-장기기증·이식 관련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절차

▪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적출에 대해 동의하면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뇌사 전 본인이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 장래에 뇌사자가 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뇌사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 기증희망등록은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희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희망 표시는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신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예시>



※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 뇌사 전에 하는 기증자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한 그 가족의 거부 의사표시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동의의 철회

▪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때에는 가족 중 1명이나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이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

▪ 다만, 뇌사자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뇌사자의 가족이 장기기증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관한 가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뇌사자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의 동의방법

▪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

▹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촌수·연장자(이 중 촌수가 우선함) 순위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장기 적출

장기적출

▪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및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이를 위반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8조제7호).

▪ 뇌사자가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뇌사자의 사망 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장기기증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검시 또는 해부 전에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추징

▪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고 다만, 몰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2.2.4.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장제비 등 지급

장제비 등의 지급

▪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등 지원한도액

▪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onos.go.kr/)-정책·사업-기증자 예우-기증자 지원금 참조].

기증자 유형	지원종류		지원액
장기기증한 경우 (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	장제비	택 1	360만원
	진료비		실비(상한 180만원)
	장례지원서비스(인체조직기증자만 해당)		540만원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만원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장제비		360만원

장제비 등 지급 절차

장제비 등의 지급 절차

▪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

유용한 법령정보

<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교류활동 지원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

2.3.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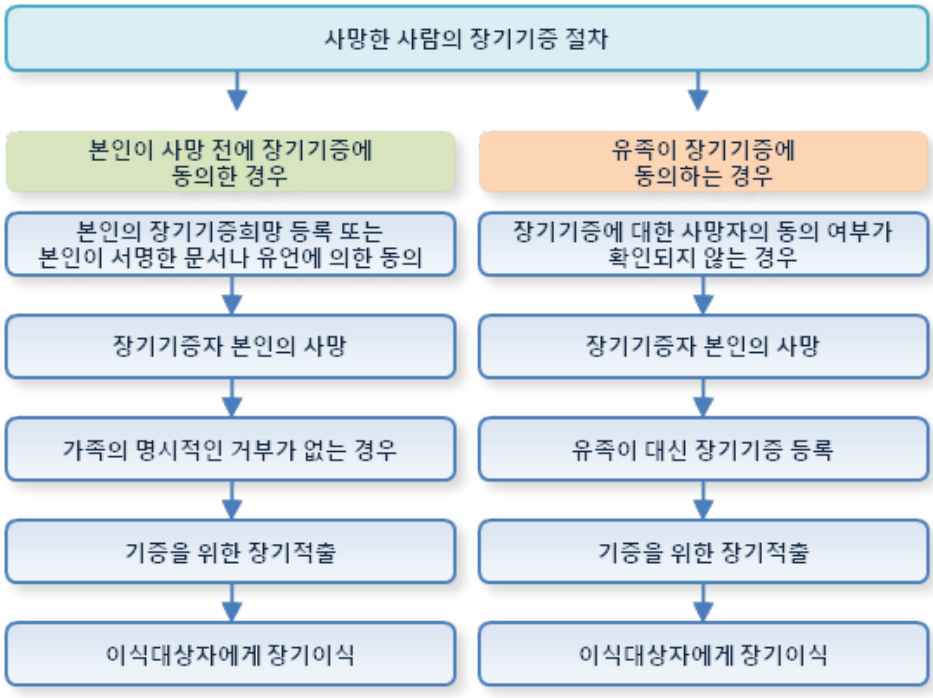
2.3.1. 사망 후 기증 가능한 장기 및 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사망한 사람은 안구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절차

▪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등록

▪ 장래에 사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망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기증희망등록은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희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희망 표시는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신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예시>



> ※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하려는 사람은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

▪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표시 철회 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망한 사람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 사망한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유족의 거부 의사표시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동의의 철회

▪ 사망한 사람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기증의사 불명확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유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유족 중 1명이나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함)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참조).

▪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 유족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기기증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유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록 신청인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동의방법

▪ 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본문).

▪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장기 적출

장기적출

▪ 장기를 적출할 때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는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 장기기증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검시 또는 해부 전에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

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추징

▪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몰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가징수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3. 장기 이식

3.1. 이식대상 장기

3.1.1. 이식 가능한 장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 간장·골수·폐·췌장·췌도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췌도·소장·안구·손·팔·발·다리 등
  입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 사망한 사람으로부터는 안구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3.2. 장기이식 대상자 등록 및 선정

3.2.1.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대기자

▪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등록 신청

▪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 질병명 및 상태
  - √ 장기 이식이 불가피한 사유
  - √ 이식이 필요한 장기의 명칭

수수료의 납부

▪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3만원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후 절차

등록신청 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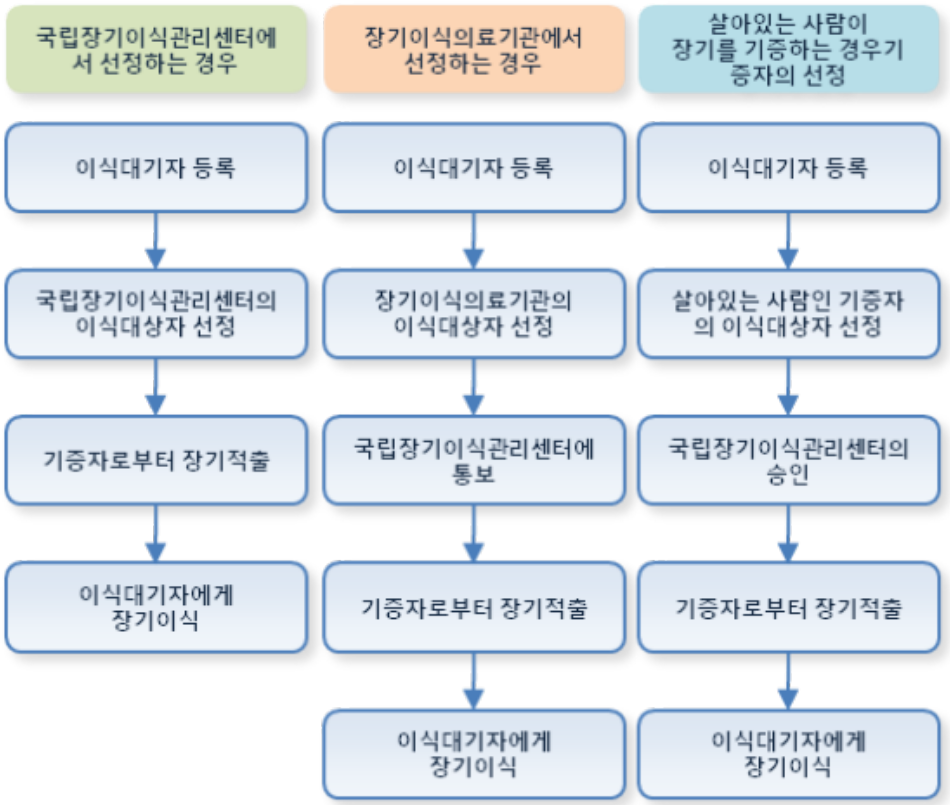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2호).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3.2.2. 이식대상자 선정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선정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안구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

-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팔 또는 발·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함)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장기등기증자·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후단).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기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금지행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2.3. 장기이식 전 검사 및 비용부담

장기이식 전 검사

장기이식 전 검사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를 이식하기 전에 장기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장기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는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비용부담

비용부담

▪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유용한 법령정보

< 장기이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Q.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비용 및 수술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또는 추징

▪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 장기를 기증해 준 기증자를 알 수 있나요? >

Q.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식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자와 적출한 장기에 관한 사항,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희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자와 장기기증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4. 장기 외 기증

4.1. 인체조직기증 · 이식

4.1.1. 인체조직기증 · 이식 개요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의 정의

▪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 심장판막·혈관
-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장막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장 기 기 증	인 체 조 직 기 증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말초혈, 손·팔/발·다리, 골수, 안구, 췌도, 소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저장 및 보관	보관 및 저장 불가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이식요건	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

"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뇌사자의 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1.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의 조직
4.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6. 조직의 채취요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조직은행의 허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조직의 수입(「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조직
7.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직
8.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기증자로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

벌칙

▪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에 해당하는 조직(위 6.은 제외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람을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인체조직의 이식

인체조직이식의 의의

▪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인체조직 관련기관

▪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 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상담에 관한 업무
-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

> ※ 조직은행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바이오정책정보-인체조직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동의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유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을 위한 조직채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조직기증에 동의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 조직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 제12조제1항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인체조직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동의의 내용

▪ 조직기증에 관한 동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①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조직의 분배·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④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

▪ 조직채취에 대한 동의는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등록 신청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 ※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2).

등록 결정 및 통보

▪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신청인은 조직기증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록의 말소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직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은 말소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

인체조직의 채취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해부 및 검시의 필요

▪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호가목).

▪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리게 되면 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단서).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합니다(「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3. 1. 또는 2.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되며 몰수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누구든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이에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4.1.3. 인체조직이식

조직이식 전 검사

조직이식 전 검사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조직을 이식하기 전에 조직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은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조직은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조직을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비용부담

비용부담

▪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①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②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③ 위 ① 또는 ②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누구든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이에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